

# 정보공개업무 처리방법

## 1 정보공개 결정 통지

- ①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로그인(서울-즐거찾기-국가연관-정보공개시스템)
    - 정보공개시스템 처음 사용자: 사용자신청 클릭
    - 정보공개시스템 기존 사용자: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록 클릭

★ 통지서 작성 전에 “사용자정보관리”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연계 아이디를 서울행정시스템 아이디로 변경하고, 부서명, 전화번호, 주소 등 현행화 할 것!
  - ② 상단에 청구관리 - ‘부서청구서현황’ 클릭
  - ③ 결정통지서 작성
    - ★ 주관부서의 경우 작성 전 꼭 지원부서 결정내역 확인!!  
지원부서가 ‘작성완료’로 되어있음을 꼭 확인하고 결정통지서 작성해야 함  
(확인치 않고 결정시 지원부서 입력 불가로 누락됨)
    - 청구서현황 상세화면 - 결정버튼 클릭 - 정보공개결정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,  
청구정보 내용 중 관련사항, 공개내용, 자료등록, 수수료, 수수료 산정내역(성동구 수수료 징수조례) 등 세부사항 입력 → 자동결재 → 서울행정시스템 연계
    - 오프라인 접수(현장접수): 구청 계좌번호(우리은행 481-05-003585, 예금주: 성동구청) 입력
  - ④ 결재: 전자결재시스템 행정정보연계 - 내부결재 (결재완료 후) → 다시 정보공개시스템 로그인
  - ⑤ 통지: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- 공개청구서 제목을 클릭 - 통지 클릭
    - ※ 결재가 완료되면 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지 절차 이행. 누락 시 처리 지연됨.
- \* 수형인(교도소 재소) 등 결정통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및 오프라인(방문접수)의 경우 꼭 결정통지서와 정보자료를 우편 또는 메일 등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.  
(결정통지서 송부는 행정절차상 우편요금으로 징수 안함)
  - \* 주의: 공개 정보를 송부할 때는 정보공개수수료 + 우편요금 징수
- ⑥ 공개완료
  - 1. 수수료가 없거나,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공개완료
  - 2. 민원인이 방문하여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: 수수료 수입증지로 납부 - 시스템 공개 실시
  - 3. 민원인이 수수료를 무통장입금 하고자 하는 경우  
계좌(우리은행 481-05-003585, 예금주: 성동구청)를 안내하고 입금을 확인한 후  
수동으로 공개실시를 클릭하여 최종 공개 완료

※ 처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처리상태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 
꼭 사용자정보관리에서 SMS 수신여부에 ‘예’ 체크해 주세요.

## 2 부 존재 처리 방법

### ○ 정보공개처리기간=부존재통지기간: 6일

- 부존재통지 법정기일은 7일, 정보공개 법정기일은 10일이나, 6일 이내 처리 준수 (부구청장방침 제670호, 2013. 12. 30.)
- 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함께 청구된 경우 10일 이내 처리

### ○ 정보공개 시 '부존재'일 경우는 결재 시 **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협조**

### ○ 통지내용에 부존재 사유 및 이의신청고지 반드시 포함

(예시) 귀하께서 청구하신 000 정보는 성동구에서 취득 및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6조제4항에 따라 『정보부존재』로 통지하오며, 본 『정보부존재』에 대하여 불복인 경우, 이의신청(령 제11조제2항)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, 『행정심판』 또는 『행정소송』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### ○ **비공개결정통지서를 우편 또는 메일로 송부(방문접수의 경우 반드시 이행)**

### ○ 부존재 판단기준

- 실제로 생산·접수하지 않은 경우(단 상당한 개연성 있을 것)
- 타 기관 자료를 취합·가공해야 하는 경우
-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한 경우
-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(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)

## 3 비 공개 처리 방법

### ○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 가능

### ○ 비공개 시 결재선 준수: **국장전결 + 민원여권과장 협조**

### ○ 법률전문관실 사전 자문검토 및 협조 필수

### ○ 통지내용에 비공개 사유 및 이의신청고지 반드시 포함

(예시)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제1항제○호에 따라 \_\_\_\_\_의 사유로 비공개(부분공개)로 결정·통지하오며, 본 비공개(부분공개)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,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# ○ 비공개 사유: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~ 제8호

### ○ **비공개결정통지서를 문서로 통지!!**

## 4 부분공개 처리 방법

### ○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

### ○ 부분공개 결정 시 반드시 공개 제한 사유 및 근거 상세히 기재

### ○ 통지내용에 이의신청고지 반드시 포함